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88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이재정・민병덕・박지원

민홍철 · 강준현 · 박홍배

임호선 · 김영호 · 강경숙
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중 "7일"을 "30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12조에 따라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영위하던 자가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제1	제13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		
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			
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			
날부터 <u>7일</u> 이내에 대통령령으	<u>30일</u>	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			
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			
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